

옥천군 공고 제2020-56호

##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월 10일

옥 천 군 수

1. 자치법규명: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  - 상위법령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 점유면적 상한 개정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함
3. 주요골자
  - (사용면적 및 사용료 등) 중 “5제곱미터”를 “10제곱미터”로 개정 (안 제11조제1항제1호)
4. 의견제출
  - 「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의견이

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(참조: 주민복지과장)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전화: 043)730-3323, FAX: (043)731-9010

가.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, 전화번호 등

## 5. 붙임

-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##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차폐되어”를 “차폐(遮蔽)되어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“5제곱미터”를 “10제곱미터”로 한다.

제24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조례명 :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 건